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408호 2022년 8월 29일(월)

입법예고

-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속초시 희망지원금 지급계획 관련,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기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속초시를 체류지를 두거나 거소지로 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 규정함.(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안전총괄과(안전총괄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757, FAX 033-639-2588
- 3) 전자문서 : entrenchy@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33-639-27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속초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급대상) ① <u>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다.</u>	제5조(지급대상) ① <u>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u>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속초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